
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현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9.

발의자 : 김현권 · 소병훈 · 위성곤

· 표창원 · 신창현 · 엄용수

· 박정 · 송옥주 · 유승희

· 이용득 · 민병두 · 송기현

· 이재정 · 어기구 · 박재호

· 김상희 · 김영호 · 진선미

· 홍문표 · 문미옥 · 김병욱

· 홍의락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소년들의 부진한 식습관으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. 특히 우리나라 성장기 어린이·청소년의 부족한 과일·채소의 섭취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야기함. 또한 잘못된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.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·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·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 식습관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.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할 수 있음.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·청소년들에 게 정기적으로 과일·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

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시설”을 “간식, 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, <u>시설·장비</u>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• ④ (생 략)</p>	<p>제26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간</u></p> <p><u>식, 시설</u>-----</p> <p>----</p> <p>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</p>